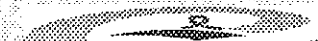


본 자료는 2004. 7. 22(목) 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담 당 과	물류교통표준과
		담 당 자	조천행 과 장 피윤섭 연구관
		전화번호	509-7241
천리안·하이텔 : go epic, 나우누리 : go mocie, 인터넷 : www.mocie.go.kr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

- 세계 최초 물류 표준설비 인증으로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 기대 -

□ 국내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동북아 물류중심 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표준설비인증』 제도를 2004. 7. 26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에 따르면 유니트로드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 표준파렛트(1100×1100mm)와 정합성을 갖는 표준형 포장상자, 컨베이어벨트, 지게차, 파렛트 등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 제도에서는 물류시스템에 정보기술(IT)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RFID), 전자문서(EDI) 등 물류정보분야 관련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인증함으로써 무분별한 IT화에 따른 물류단계별 호환성 부족 등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번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물류표준설비인증』 제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물류설비에 대해 국제규격(ISO, IEC)과 국가규격(KS)을 기본으로 국내업체 현실을 감안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하며,

- 물류설비 생산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설비 신설·개체 자금 등 정부자금과 세제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일본, 중국 등과 한·중·일 물류표준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 이 제도가 정착되면 물류표준화율을 연간 5%씩 증가시켜 5년후에는 미국수준인 60%대, 10년후에는 유럽수준인 85%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물류시스템의 일관수송체계 확립으로 물류설비의 기계화·자동화율을 95%이상으로 향상시켜 2005년 3조원, 2015년 10조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이란?

- 하역작업의 혁신을 통해 수송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중량 또는 체적으로 단위화시켜 일괄해서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수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우리나라는 포장, 유니트로드 치수, 파렛트, 물류기기 및 수송기관 상호간에 정합성을 갖도록 일관 수송용 파렛트(1,100mmX1,100mm)를 기본으로 체계화하였다

[참고]

-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현황은 기계화율이 저조하고 물류표준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선진국대비 높은 물류비를 안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 대비 높은 물류비

- 우리나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 등 물류활동에 사용된 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한국	미국	일본
· 국가물류비(GDP대비)	12.4%	9.5%	9.6%
· 기업물류비(매출액대비)	11.1%	9.2%	5.5%

○ 일관수송체계 구축미비로 연간 2조원의 경제적 손실

- 수송비 및 창고보관비가 전체 물류비의 85%(572천억)를 차지
- 비규격 창고이므로 파렛트단위 입출고율이 24.3%에 불과

○ 물류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

- 표준파렛트 사용율 : 한국 30% 일본 45%, 미국 60%, EU 90%
- 개별기업별 비표준 파렛트 과다보유로 일관수송 저해

○ 표준파렛트 사용을 위한 포장 및 하역의 기계화율 저조

- 하역 완전기계화 11.3%, 일부 기계화 75.6%
- 포장라인의 수작업 의존도 30.6%

○ 물류설비의 표준규격 장비 사용율 미흡

- 공장과 물류센터간 장비치수 차이로 일관수송 곤란
- 표준규격장비 사용률 : 지게차 12.6%, 컨베이어 13.3%, 대차 10.6%

□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물류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동시에 물류업계의 20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 그간은 개별기업마다 서로 다른 규격의 물류설비를 이용함으로써 기업물류비 절감이 어려웠음.

○ 물류표준화가 이루어지면 물류프로세스간 연계성 강화로 물류인력절감, 처리 시간단축, 장비활용 극대화 등 물류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1980년대부터 물류표준화를 위해 KS규격을 정비하고 1990년대에는 일관수송체계(ULS) 구축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일관수송체계(Unit Load System)구축을 위한 표준파렛트로 T-11형을 선정하고,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음.

□ 물류 표준설비인증 대상품목은 KS규격의 일관수송체계(유니트로드 시스템 : Unit load system)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 분야의 설비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파렛트, 지게차, 파렛타이저, 랙설비, 포장박스, 컨베이어 등임

※ 인증대상분야

1. 파렛트,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송·배송설비
2. 파렛타이저, 랙설비, 박스용기, 컨베이어 등 보관·하역설비
3.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 인식기 등 분류·포장설비
4. 전자문서(EDI), 바코드, 무선상품인식(RFID) 등 물류정보화설비

□ 정부는 물류설비의 대부분이 주문자 생산방식(Order-made)인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보다는 표준설비로 신설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자금, 세제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물류 표준설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현재 시행중인 지원제도는

- 정책자금지원(유통합리화자금)

- 지원대상 : 물류인증설비 생산자 및 사용자
- 지원금액 : 30억원이내(포장컨설팅은 10억원이내)
- 지원규모 : 500억원('04년도)
- 금리 : 연 4.9%
- 융자기간 : 8년이내(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세제지원(물류설비 투자세액공제)

- 지원대상 : 무인반송차, 컨베이어시스템, 창고시설, 파렛트, 파렛타이저, 컨테이너, 컨테이너 하역 운반장비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공제비율 : 3/100(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3/100(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물류산업분야)
10/100(임시투자세액공제→유통산업합리화시설)

○ 향후 물류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지원제도로는

1. 물류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
2. 인증 물류설비 도입시 저리 자금지원
3. 인증 물류설비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4. 인증 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제도 도입

○ 물류설비 생산·수입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물류기업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류설비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과의 적합성을 심사·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함.

-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은 물류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류표준설비인증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함.

- 표준규격은 KS규격을 따르며, KS규격이 없거나 물류설비 관련 기술의 발전 등으로 T-11형 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는 별도로 제정

○ 물류 표준설비 인증제도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 사업자단체와 한국물류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물류관련 단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물류표준설비 인증의 기대효과는

○ 물류 표준화율 향상

- 물류표준화 연평균 증가율

· 인증실시전 10%('92) → 30%('02) : 연간 2%씩 증가

인증실시후 35%('05) → 85%('15) : 연간 5%씩 증가

※ ('06) 40% (일본 수준) → ('10) 60%(미국수준) → ('15) 85%이상 (유럽수준)

○ 물류설비의 기계화·자동화 실현

- 하역기계화 증가율 65.7%('01) → 95%('15)

· 인건비 절감 33.2%('01) → 15%('15)

※ 물류비의 요소별 비중 : 인건비 33.2%, 연료비 12.9%

○ 물류시스템의 일관수송체계 확립

- 화물운송시 날개(상자)단위를 파렛트 단위로 개선

· 파렛트 단위 27.3%('01) → 95%('15)

※ '01년도 날개단위 27.9%, 상자단위 44.8%, 파렛트단위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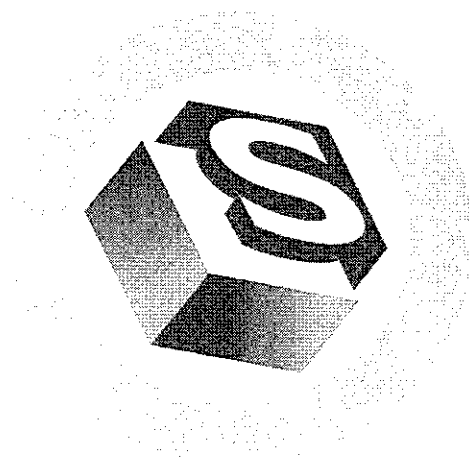
○ 물류표준화 정착으로 연간 물류비 절감(연평균 3 ~ 5%)

- 연간 물류비 절감 : 3조원('05) → 10조원('15)

· 국가물류비 94.5조원('05) → 141.7조원('10) → 212.6조원('15)

※ 국가물류비 '91년(26.0조원) ~ '01년(67.5조원) 연평균 10.0%씩 증가

물류표준설비인증 제도 안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KOREA

Certificate of Standardized Logistics Equipment

□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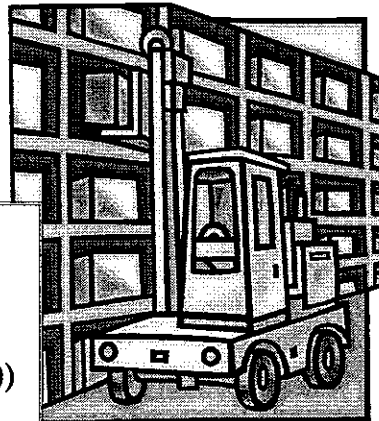
- 물류설비 생산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물류표준설비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 그 결과가 국가표준 물류설비규격과 맞는 규격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목적

- 물류설비에 대한 표준인증제 실시로 물류설비의 표준화 촉진
- 유니트로드시스템 정착으로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과 생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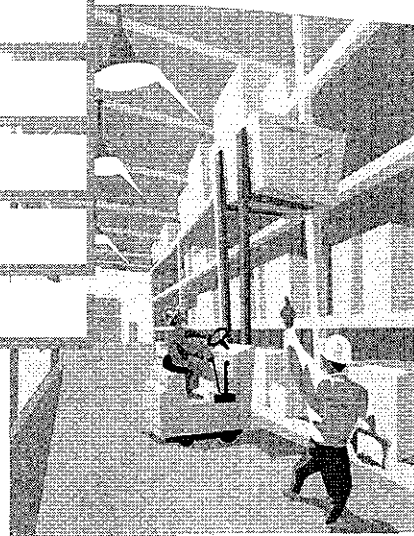
□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
-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4호, 2004. 7. 9)



□ 신청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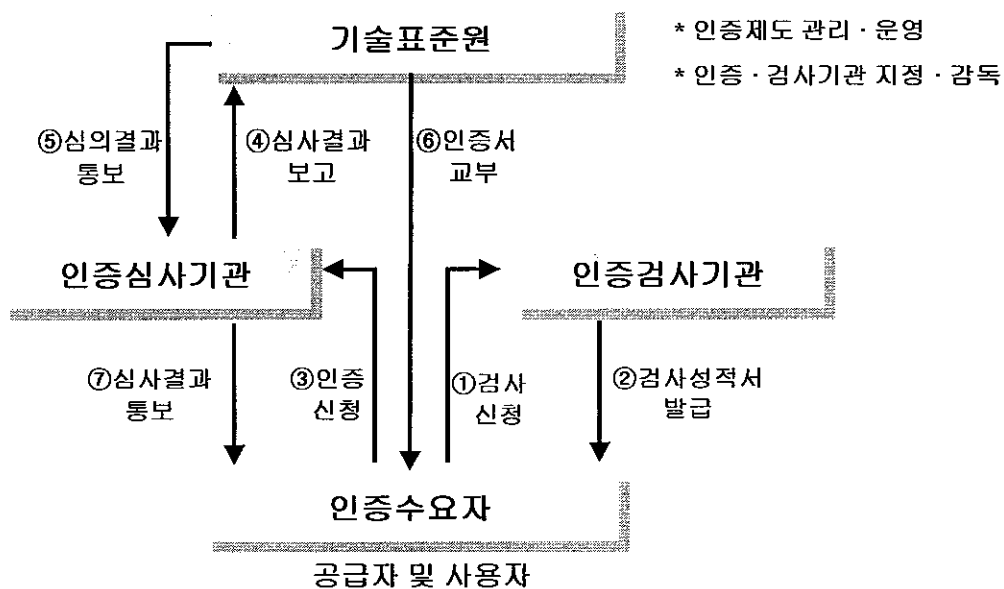
수송·배송설비	팔레트, 지게차, 무인운반차등
보관·하역설비	팔레타이저, 랙설비, 포장박스용기등
분류·포장설비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인식기등
물류정보화설비	EDI, RFID, 바코드등
기 타	기술표준원이 정하는 물류설비



□ 신청대상업체

공 급 자	물류표준설비 생산·수입·공급하는 업체
사 용 자	물류표준설비 사용 업체 및 물류사업자

□ 심사체계



□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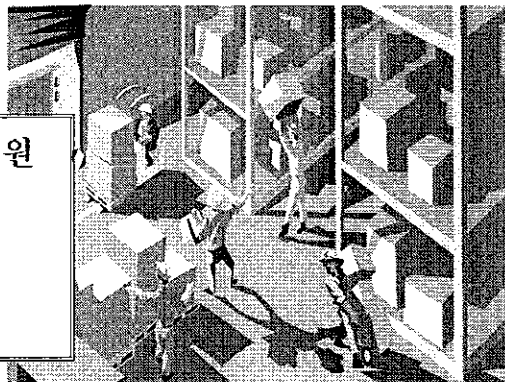
신청 (생산/사용자)	○ 소정의 양식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 인증심사기관에 신청(수수료 납부)
제품시험 (인증검사기관)	○ 품목별 인증검사기관에서 수행 - 표준규격 및 기준에 따라 시행
신청서 검토 (인증심사기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 미비서류 보완
서류 및 현장심사 (인증심사기관)	○ 인증심사기관에서 수행 - 인증심사기준 및 지침에 의함
인증심의 (기술표준원)	○ 각 인증심사기관에서 상정된 내용을 심의 - 물류표준설비전문위원회에서 종합심의
인증서 교부 (기술표준원)	○ 기술표준원에서 교부 -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발부

□ 평가비용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심사기관 또는 인증심사기관에 납부
- ※인증업무를 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수행시에는 수수료 면제

□ 인증설비에 대한 지원

- 유통합리화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 물류설비 투자세액공제
- 인증업체 및 설비에 대한 홍보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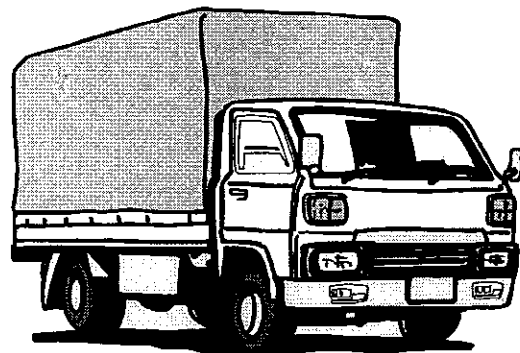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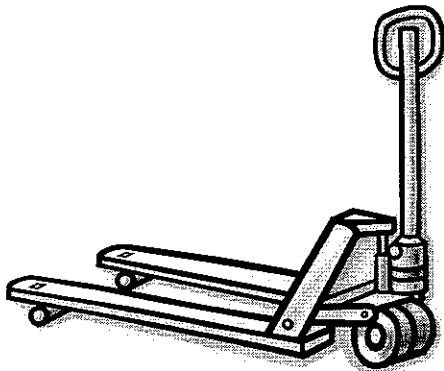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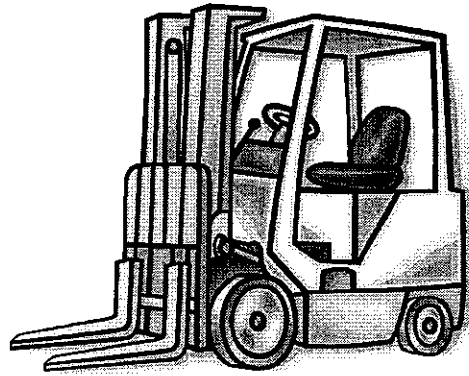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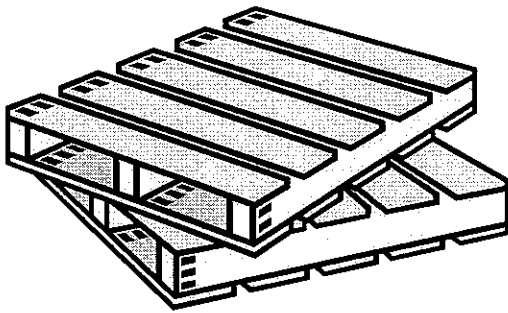


□ 신청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과
Tel)02-509-7241~5 Fax)02-509-7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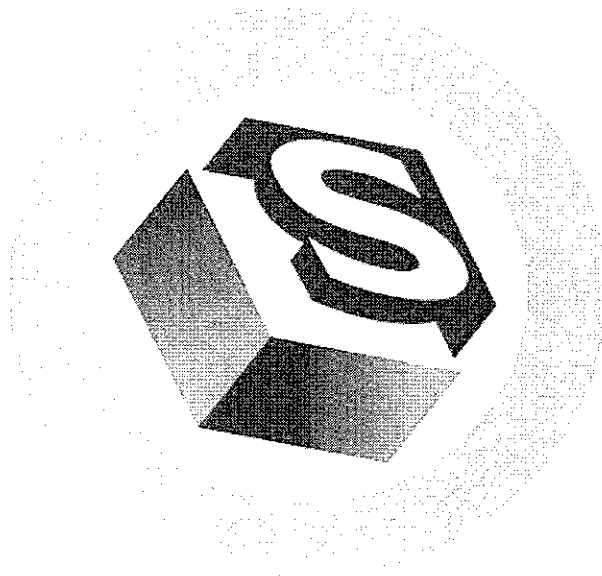
□ 접수기간

○ 수시로 신청 접수



□ 물류표준설비 인증 표시

-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당해 설비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안설명

물류표준 영문표기인 Logistics Standards의 이니셜 "LS"에 정사각의 물류표준파렛트를 의미하는 도형을 이미지화하여 안정되고 일관성있게 동일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발전적 물류시스템을 상징

□ 각종 양식

○인증신청서

물류표준설비인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의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신청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 :)		
	물류설비	⑨설비명		
		⑩규격		
		⑪사양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표준설비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개요 1부 2.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규격·사양·구조 등이 포함된 설명서 1부 3. 외관도 또는 사진 1부				수수료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 국문 인증서

물류표준설비인증서

1. 인증번호 : 제 호
2. 법 인 명 :
3. 대표자의 성명 :
4. 소 재 지 :
5. 인증물류설비
 - 가. 설비명
 - 나. 규격 :
 - 다. 사양 :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
물류표준 설비규격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물류표준설비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인

○ 영문 인증서

Certificate of Standardized Logistics Equipment

1. Certificate No. :
2. Company :
3. President :
4. Address :
5. Certified Logistics Equipment
 - 1) Name :
 - 2) Type, Class or Designation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forementioned equipment is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of logistics equipment and certification criteria under Article 27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dustry Promotion Act.

Minister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